

#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58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3월 30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실외이동로봇 운행 기준을 준용하여 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통행 허용 근거를 마련

## 2. 주요내용

가. 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운행 규정 신설(안 제17조제10호의2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창의규제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- (5) 규제개선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 
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6. 1. 29. ~ 2. 18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서성규 (☎ 02-3780-0813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

###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4호의2의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행위. 다만,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및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가.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일 것

나. 실외이동로봇의 질량(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)이 100킬로그램 이하일 것

다.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속도가 시속 5킬로미터 이하일 것

라. 하천관리청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구간을 준수할 것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금지행위)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17조(금지행위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의2. 「<u>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</u>」 제2조제4호의2의 <u>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행위.</u> 다만,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외이동로봇을 차도 및 「<u>도로교통법</u>」 제2조제8호에 따른 <u>자전거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p>가. 「<u>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</u>」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<u>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일 것</u></p> <p>나. <u>실외이동로봇의 질량(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)이 100킬로그램 이하일 것</u></p> <p>다. <u>실외이동로봇의 운행속도가 시속 5킬로미터 이하일</u></p>

11. ~ 15. (생략)

② (생략)

것

라. 하천관리청이 정한 운행

시간 및 운행구간을 준수

할 것

11. ~ 15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 
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비용 추계 어려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한강공원 내 실외이동로봇 통행 허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언적 형식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 서성규 (☎ 02-3780-0813)